

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

하남시장(기획조정과)

제출일 : 2026. 7.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
적극행정 보호관 지정,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 지원,
적극행정위원회
구성 및 운영 방식 개선 등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- 가.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정비(안 제2조)
- 나.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(신설)(안 제2조의 2)
- 다. 적극행정위원회 기능 정비(안 제3조)
- 라.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개선(안 제4조)
- 마.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추가(안 제6조)
- 바. 적극행정위원회 간사 변경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유정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근거를 정비하고, 적극행정 전담부서·책임관 및 보호관 지정 등 적극

행정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,

-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방식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, 서면심의 및 감사부서장 의견 제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- 검토 결과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,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